2016년도 장애인콜택시
자동차보험 가입 용역 과업지시서

Ⅰ. 계약일반에 관한사항

1. 용 역 명 : 2016년 장애인콜택시 자동차보험 가입 용역
2. 보험기간 : ′15.12.31 24:00 ~ ′16.12.31 (1년)
3. 가입대상 : 424대
4. 기초금액 : 금389,417,667원
5. 가입내용 : 대인(Ⅰ,Ⅱ), 대물, 자차, 자손, 법률비용지원, 유상운송,긴급출동서비스 등

Ⅱ.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

□ 청약사항

담보내용			가입금액	기타 특약사항
대인배상Ⅰ(책임보험)			자동차배상법에서 정한 금액	○ 만 26세 이상 특약 ○ 유상운송 특약 ○ 관용자동차 특약 ○ **물적사고 할증기준 50만원** ○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 * 단 카운티제외
대인배상Ⅱ(임의보험)			무 한	
대물배상			10,000만원	
자기신체사고(사망/부상/장애)			3,000만원/1,500만원/3,000만원	
자기차량손해			물적할증지원금 50만원 자기부담금 5만원~50만원	
무보험자동차 상해			2억원	
법률지원 특약	형사합의 지원금	사망	3,000만원	○ 법률지원 특약 기준 공시조건 이상 이어야함
		부상 (1급~7급)	최저200~최고1,000만원	
	벌 금 (1사고당)		2,000만원	
	방어비용 (1사고당)		300만원	

□ 공통사항

① 차량 보험계약기간은 2015.12.31(24:00) ~ 2016.12.31까지로 한다.

② 보험계약은 계약일로부터 효력을 진행하되, 계약업무 지연이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의사 통보로 효력을 진행시킬 수 있다. 이 경우 보험료가 입금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보험계약의 효력을 정지 또는 해지할 수 없다.

③ 보험료 납부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예산집행 사정에 따라 입금이 늦어질 경우 '제2항'의 예에 따른다.

④ 계약기간 중에 있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성실하게 관리하고 차기 계약사가 변경 선정될 경우에는 갱신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출한다.

⑤ 보험계약기간 중 차량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차량별로 부가사항을 기재하여 변동되는 보험료를 납부하거나, 환불하고 차량별로 재계약할 수 있다.

⑥ 차량대폐시 대폐 지정일로부터 매각일까지 책임보험으로 전환이 가능하여야 한다.

□ 신규계약

① 신규계약 또는 차량 교체 등으로 차량번호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차대번호로 계약후 차량등록 완료 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 후 확정한다.

② 대, 폐차 차량에 대하여는 요율승계(차량 자동승계)로 가입하고, 보험가입자의 다른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기존 가입차량의 요율승계는 하지 않는다.

□ 갱신계약

① 보험가입자의 사정에 의하여 보험계약기간의 만료 시 만료일 15일전에 재계약을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재계약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.

② 차량교체 등으로 기존의 차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잔여기간의 범위내에서 다른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 할 수 있으며, 기존차량에 대한 보험계약은 해지할 수 있다.

이때(보험 해지의 경우), 기존 보험계약사는 기존차량의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.

□ 기타 특약

① 보험사에서 정한 약관과 본 계약서와 다른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자에게 유리한 사항을 적용한다.

② 본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보험사에서 정한 약관을 적용한다.

③ 차량별로 각각 청약서 및 보험증서(영수증)를 발행한다.